

# 슈퍼컴퓨팅센터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이 기구는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부속 슈퍼컴퓨팅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교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본교 학술연구 발전, 학생 수업 지원을 위해 설치한 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소재지)** 센터는 본교 자연과학캠퍼스 안에 둔다.

**제4조(정의)** “슈퍼컴퓨팅”이라 함은 매우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수의 고성능 컴퓨터를 병렬로 작동, 시스템 자원을 집중 활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
1. 연구·교육 융합 클러스터(클라우드) 환경 구축 및 슈퍼컴퓨팅 서비스 제공
2. 센터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수립 및 고성능 컴퓨터 공동 활용 촉진
3. 대외기관(국가슈퍼컴퓨팅센터 등) 교류 협력 및 기술 네트워크 구축
4. 고성능 컴퓨터 활용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진행
5. 대내외 슈퍼컴퓨팅 관련 행사(경진대회 등) 지원
6. 교내 유관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수탁 관리
7. 고성능 컴퓨터 사용료 및 수탁 시스템 관리비 징수
8. 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(하드웨어/소프트웨어 포함) 유지·보수
9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제반 업무 수행

## 제 2 장 조 직

**제6조(구성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

1. 센터장
2. 간사
3. 운영위원회
4. 행정직원

**제7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제반 업무와 운영을 통할한다.

**제8조(간사)** ① 간사는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 일반사무를 관장한다.

**제9조(행정직원)** ① 센터에는 약간 명의 행정직원을 두며, 본교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행정직원은 센터의 일반사무를 수행하고, 센터 내 제반 인프라를 관리하고 운영한다.

**제10조(연구원)** ① 센터에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.

③ 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11조(설치)**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② 위원장 외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,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3조(심의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에서 운영되는 주요기기의 선정, 도입, 활용, 운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
3. 고성능 컴퓨터 활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
4. 고성능 컴퓨터 사용료 및 수탁기기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
5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7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**제14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4 장 재 정

**제15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교비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.

**제16조(회계)** 센터의 회계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5 장 보 칙

**제17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